

투 자 설 명 서

2017년 7월 28일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대신 니켈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 3호)

(매출가액 7,000,000,000원 발행가액 1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7년 7월 28일
2. 모집가액 : 7,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17년 7월 31일
4. 납입기일 : 2017년 7월 31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대신증권주식회사 02)769-200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종목명: 대신증권 대신 니켈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 3호]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Nickel Futures : LM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Nickel Futures : LM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증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외환거래 포함)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 -S&P GSCI Nickel TR : S&P Dow Jones Indices LLC 또는 그 승계기관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8) 시장교란사유	i)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u>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가, 하한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 ii)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u>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u>

	<u>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 iii)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9) 증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1) 발행가액	최초 발행시의 1증권당 지표가치로 해당 상품의 만기까지 불변
12) 지표가치금액	총액 개념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 기초지수가격에서 제비용 만큼 차감한 가격.
13) 일일 지표가치 (IV:Indicative Value)	당일지표가치(T) = 전일지표가치(iV)(T-1) X (당일기초지수증가(T)/전일 기초지수증가(T-1)) - 제비용 *당일지표가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전일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산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괴리율 산출. - 한국예탁결제원 산출.
14) 실시간 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1) 09:00~15:30의 경우 실시간지표가치(iiV) = 전일지표가치(T-1) * [실시간 기초지수(T)/전전일 기초지수증가(T-2)] *당일지표가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전일지표가치(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출된 기초지수 값 *전일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지수거래소 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5초 이내로 설정. - 장중 매매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코스콤 산출. -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S&P GSCI Nickel TR(으)로 산출됩니다. ● 이 기초지수는 LME와그 전산장인 LMES에서 거래되는 Nickel Futures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9:00~익일 04:10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다. ● Nickel futures의 실시간 가격 확인 웹사이트 http://www.lme.com
15) 괴리율	$\text{괴리율}(\%) = \frac{(\text{시장가격} - \text{지표가치})}{\text{지표가치}} \times 100$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I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장중 괴리율의 경우 지표가치(IV)가 아닌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6)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지급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제방법 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대신증권 대신 니켈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 3호	
기초지수 종류	S&P GSCI Nickel TR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선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모집(매출)총액	7,000,00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700,000주	
청약일(기간)	2017년 07월 31일	
납입일	2017년 07월 31일	
발행일	2017년 07월 31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 상환금액 결정일	2022년 08월 03일(수)	
만기일	2022년 08월 05일(금)	
지급일	2022년 08월 09일(화)	
만기시, 중도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환헤지 여부	환헤지(100%) 100% 환헤지를 통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해당 ETN의 가격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분배금	지급(재투자)
	지급방식	총수익(재투자)방식
	분배금지급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지급일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①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함. 단,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이 지급일이 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이자 및 기타 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가격결정일이 그 초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2022년 07월 20	

	일)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 가격결정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③ 중도상환 가격결정일 및 만기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만기 가격 산정이 불능한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합니다. ④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체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합니다. ⑤ 만기 가격결정일 지연사유가 연속된 8예정거래일 이상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시장에 따른 조기상환 및 권리내용의 조정에 관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⑥ 증권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17년 08월 07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TN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을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2 제2항 3호(공모), 4호(발행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ETN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3)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II.증권의 권리내용](#)
2.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배정 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청약 및 배정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청약증거금	청약금액(발행가액X청약수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	최저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는 700,000증권으로 합니다.
청 약 기 간	2017년 07월 31일
배정 및 환불일	2017년 07월 31일
납입일	2017년 07월 31일

※ 본 증권은 발행사인 대신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후 전량 발행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대권 1매를 발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며, 보유자는 본 증권의 실물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증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의 실물은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고객계좌부예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17년 08월 07일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규정 제149조의2 제2항 3호(공모), 4호(발행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 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9조(상장예비심사)의 제4항에 의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의 2항(신규상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 (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로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인가가 획득되었을 것 나.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일 것(중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나타내는 지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 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본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지수의 가격,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 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ETF(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증권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

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시장(07:30~08:30, 15:40~18:00)을 통해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1.5%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의5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조건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중도상환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공급계획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신규상장)에 따른 본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발행인인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본 증권에 대하여 해당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공급 기능은 주식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헷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자(Trader 2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

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1.5%)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 *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증권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것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헤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 관리, 만기/조기

상환 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부 승인 절차, 헤지거래의 시장충격 완화, 발행사가 백투백 헤지 또는 제 3자 유동성공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 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1.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이라 함)은 발행인과 일반사무관리 계약을 맺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계산기관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몰

②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만기 지급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42 우리은행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대신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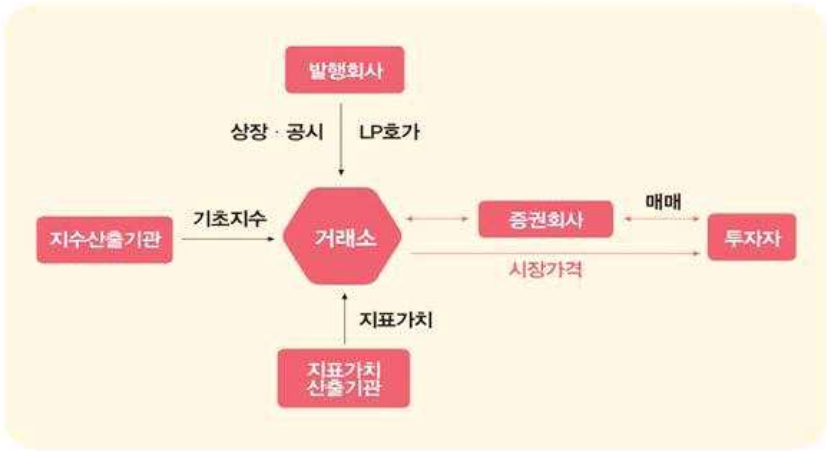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항목	내용
증권명	대신증권 대신 니켈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 3호
기초지수명	S&P GSCI Nickel TR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선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P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S&P GSCI Nickel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u>환전수수료 없이 Nickel Future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니켈 선물 강세가 나타날 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반면 니켈 선물이 위와 다르게 움직일 경우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u>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Nickel Futures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ETN 시장 구조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 투자자)

2. 예상손익구조

(1)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발행 관련 비용(상장예비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예탁수수료, 증권발행대행수수료, 발행분담금 등) 포함	0.61%
	라이센스	기초지수 개발 및 라이선스 비용	0.10%
	위탁사무보수	한국예탁결제원	0.04%
	기타비용	헤지거래 관련 유관 기관 수수료 및 거래비용.	0.15%
소계		—	0.90%
기초지수 반영 비용	—	해당사항 없음.	—
	—	—	—
소계		—	—
합계		—	—

(2) 예상손익구조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0.90	365	100만원	100.00	1

* 해당 상품은 지표가치(IV,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일별로 본 증권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상품이 해당 날짜에 발행되어 만기까지 투자하였을 경우 얻는 투자수익률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승후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104.00	4.00%	0.94	0.94	103.06
2	116.00	11.54%	1.04	1.98	113.91
3	106.00	-8.62%	0.95	2.93	103.14
4	98.00	-7.55%	0.88	3.82	94.47
만기	93.00	-5.10%	0.84	4.66	88.81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7.00%		
		연률화	-2.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1.19%		
		연률화	-3.73%		

② 하락후 상승

연도	기초지수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96.00	-4.00%	0.86	0.86	95.14
2	92.00	-4.17%	0.83	1.69	90.34
3	81.00	-11.96%	0.73	2.42	78.81
4	96.00	18.52%	0.87	3.29	92.54
만기	104.00	8.33%	0.94	4.22	99.3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00%		
		연률화	1.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0.68%		
		연률화	-0.23%		

③ 최초대비 상승 그리고 등락

연도	기초지수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101.00	1.00%	0.91	0.91	100.09
2	107.00	5.94%	0.96	1.87	105.07
3	111.00	3.74%	0.99	2.87	108.00
4	121.00	9.01%	1.09	3.96	116.64
만기	125.00	3.31%	1.13	5.09	119.37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5.00%		
		연률화	8.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9.37%		
		연률화	6.46%		

④ 최초대비 하락 그리고 등락

연도	기초지수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96.00	-4.00%	0.86	0.86	95.14
2	89.00	-7.29%	0.80	1.67	87.40
3	86.00	-3.37%	0.77	2.44	83.68
4	81.00	-5.81%	0.73	3.17	78.08
만기	80.00	-1.23%	0.72	3.89	76.4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0%		
		연률화	-6.67%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3.60%		
		연률화	-7.87%		

⑤ 등락폭 확대

연도	기초지수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96.00	-4.00%	0.86	0.86	95.14
2	89.00	-7.29%	0.80	1.67	87.40
3	80.00	-10.11%	0.72	2.39	77.84
4	71.00	-11.25%	0.64	3.03	68.44
만기	55.00	-22.54%	0.50	3.52	52.5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5.00%		
		연률화	-15.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47.48%		
		연률화	-15.83%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

을 연 6%(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세전)=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42 우리은행

-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발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②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9%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구분	T일	T+1일(의무) T+2~9일(시장교란 시)	T+3~5일 T+4~13일(시장교란시)	T+4~14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 확인/승인	평가(당일 증가로 산출되는 IV적용) or 연기 (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 행사 통지	상환대금 산출	증권 소각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 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중도상환 세부 내용

구분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가능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발행일 익 거래소 영업일로부터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4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단위	70,000증권(7억원, 발행가격 기준)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350,000증권(35억원,발행원본액 기준) 으로 제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해당 ETN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 발행사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매도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단위 수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철회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4 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에 산출될 지표가치 *중도상환 가격의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거래소 영업일 증가로 산출되는 지표가치(IV)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가격의 1.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신청 철회 시까지 유지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중도상환요청을 취소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지급일	만기일 : T일 만기 지급일 : T+2일
	가격결정방법	최종거래일 지표가치. *만기상환가격은 최종거래일 증가로 산출되는 지표가치(I.V.)를 의미합니다.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재투자 상품**으로 구분의 총수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급 (주식형, 채권형)	시장가격 지수	① ETF방식 : 지표가치에 예상배당금 반영	
		분배금 지급기준일	ETF와 동일하게 설정 Ex) 국내외주식형 : 1,4,7,10월 마지막 영업일 채권형 : 12월 마지막 영업일 or 이자발생시기 상품형/혼합형 등 : 12월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분배금지급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 락조치 실시
	② 주식방식 : 지표가치에 배당금 미반영 *국내주식형 ETN만 적용가능		
	분배금 지급기준일	상장법인의 결산월별 배당기준일	
	분배금신고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분배금지급일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이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총수익 (채투자) 지수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채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보유자에게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조기상환일은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만, 사유발생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합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제3-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기상환 등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유동성 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 발생사실,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은 발행인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으로써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발행인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 ①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상환의무나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상환가격결정일의 지표가치(IV)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조기상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의 변경사유

○ 지수 산정의 오류 등 :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및 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초자산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

①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8예정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거나 예정되는 경우로써, 발행인이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발행인은 "(2) 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증권 보유자에게 만기 전에 상환하게 됩니다.

②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필요한 날(만기 가격결정일, 중도상환 가격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각각의 가격결정일 및 지급일 등의 권리내용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i) 각각의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가격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顺延한다.

ii)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한다.

iii) 위의 i) 또는 ii)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만기 가격결정일 지연사유가 연속된 8 예정거래일 이상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발행인은 "(2)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만기 전 상환하게 됩니다.

○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에서 증권의 권리를 변경 할 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한국거래소(www.krx.co.kr)를 통하여 공시를 할 것입니다.

(4)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①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 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장 소정의 청산 및 파산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이러한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 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

	<u>생상품적 성격</u>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u>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u> 또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u>기초자산의 부도, 매도 시 음의 괴리율, 투자시점 대비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 보합 또는 상승 시에도 누적된 제비용 등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u>이 있습니다.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경우 <u>추가발행 제한/발행 재개, 발행회사 신용상태, LP호가 스프레드 확대/유동성공급 제한, 가격제한폭/시차</u> 등으로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유동성 호가제출면제 시간대에 일반 투자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본 ETN증권의 <u>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될 위험</u>이 있습니다. 또한 <u>ETN상품의 특성으로 인해</u>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간 내에 급등락 할 경우, <u>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ETN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u>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 <u>기초지수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u>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u>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u>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u>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u>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u>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u>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u>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u>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u>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u>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발행회사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 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17년 05월 15일자로 제출된 제57기 1분기 분기보고서(2017.01.01 ~ 2017.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적용하지 않음)

3. 상장관련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30% 이내에서 변동 합니다.(레버리지는 ±60% 내에서만 변동합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해당 ETN 종목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table><tr><td>매매거래정지 사유</td></tr><tr><td>○ 발행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 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간까지</td></tr></table>	매매거래정지 사유	○ 발행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 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간까지
	매매거래정지 사유		
○ 발행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 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간까지			
<table><tr><td>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td></tr><tr><td>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 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td></tr></table>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 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 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	--

4. 중도상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u>상환 청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u> 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u>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u> 에서 본 증권의 <u>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u> ,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u>ETN의 상장폐지로 조기에 상환될 위험</u> 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상장관련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해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u>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1.5%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u>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

	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u>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u>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 법률상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u>초과소득(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 -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u>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u>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u>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 실무 위험	본 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 공급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나, 유동성공급 시스템의 부득이한 오류로 인해 유동성공급 업무 수행상 오류가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 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P보유량 정보 공시	발행사가 사실상 단일 LP가 되고 신규상장 시 100% 보유 상태

에 관한 사항	에서 배출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ELW와 같이 LP보유량을 매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6.상품내용에 관한 사항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수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누적수익률 괴리 위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사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로,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 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보다 긴 기간 동안의 기초자산(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 각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괴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1. 기초지수 '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 위험	본 증권은 니켈 산업의 위험인 생산, 정책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분쟁, 기후와 같은 요소에 의한 생산량 변동, 정부의 생

	산량 제한, 운용과 관련한 폭발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전 니켈산업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이런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자체의 가격, 현물가격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은 런던금속거래소와 ESMA(유럽증권감독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들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당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1배수의 수익률로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 GSCI Nickel TR 지수에 포함된 Nickel Futures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항목	내용
지수명	S&P GSCI Nickel TR
지수개요	LME에 상장되어 있는 Nickel Futures의 일일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는 전략을 지수화
유니버스	해당사항 없음.
편입대상 종목 선정기준	Nickel Futures 최근월물
구성종목수	1종목 (2017.06.기준)
비중결정 방식	100%
종목교체 비중조정 기준	해당사항 없음.
교체(Roll-over)방법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5영업일부터 9영업일까지(미국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발행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혹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ily Rebalancing 방법	해당사항 없음.
정기변경일	해당사항 없음.
CAP비율	해당사항 없음.
비중조절을 위한 수 시변경 체계	해당사항 없음.
지수산식	지수 산출 방식 $IndexTR_t = IndexTR_{t-1} \times \left(\left(\frac{IndexER_t}{IndexER_{t-1}} \right) + TBR_t \right)$ TBR_t = 3-Month US Treasury Bill의 일일 수익률 ※ 일반적으로 선물에 투자할 경우 해당 선물의 증거금 부분만 실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초지수는 니켈 선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물의 증거금을 제외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단기금리(T-bill) 수익률을 가산하여 계산(Index TR)되고 있습니다. ※ TBR_t 산출방법 $TBR_t = \left[\frac{1}{1 - \frac{91}{360} \times TBAR_{t-1}} \right]^{\frac{Delta_t}{91}} - 1$ $Delta_t$ = 지수산출시점부터 전 해당선물 영업일까지의 달력일자 수 $TBAR_{t-1}$ = 주중 발표된 미국 국채91일물의 주간 할인을 중 가장 높은 수익률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여 휴일일 경우 금요일 할인을 적용

기준시점	1970.01.01.
기준지수	100
산출주기	10초 ○ 일반적인 KRX 산출지수의 산출주기 유지
산출시간	09:00~ 익일 04:10 ○ 한국시간 기준/ 서머타임시 시간 포함
지수산출기관	S&P

- 지수 산출방법 세부 내용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선물에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IndexER(Excess Return)을 기반으로 하여, 3개월 미국 Treasury Bill 채권수익률을 지급하는 IndexTR(Total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dexTR 산출 방법:

$$IndexTR_t = IndexTR_{t-1} \times \left(\left(\frac{IndexER_t}{IndexER_{t-1}} \right) + TBR_t \right)$$

TBR_t = 3-Month US Treasury Bill의 일일 수익률

※ 일반적으로 선물에 투자할 경우 해당 선물의 증거금 부분만 실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초지수는 니켈 선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물의 증거금을 제외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단기금리(T-bill) 수익률을 가산하여 계산(Index TR)되고 있습니다.

※ TBR_t 산출방법

$$TBR_t = \left[\frac{1}{1 - \frac{91}{360} \times TBAR_{t-1}} \right]^{\frac{Delta_t}{91}} - 1$$

Δt_t =지수산출시점부터 전 해당선물 영업일 까지의 달력일자 수

$TBAR_{t-1}$ = 주중 발표된 미국 국채91일물의 주간 할인을 중 가장 높은 수익률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여 휴일일 경우 금요일 할인을 적용

※ IndexTR 산출 방법:

$$IndexER_t = IndexER_{t-1} \times (1 + (R_t - 1))$$

$$R_t = \frac{P_t}{P_{t-1}}$$

①롤오버(Roll-over)기간이 아닐 경우(최근월물 가격 변동만 반영)

$$P_t = (CW_{y,t-1} \times FP_{y,t})$$

$$P_{t-1} = (CW_{y,t-1} \times FP_{y,t-1})$$

②롤오버(Roll-over)기간일 경우(최근월물과 차근월물의 가격 변동 반영)

$$P_t = (CW_{y,t-1} \times FP_{y,t}) + (CW_{z,t-1} \times FP_{z,t})$$

$$P_{t-1} = (CW_{y,t-1} \times FP_{y,t-1}) + (CW_{z,t-1} \times FP_{z,t-1})$$

t: 지수산출시점, t-1: 해당선물 시장의 직전거래일

y: 최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z: 차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CW_{y,t}$ = t 시점의 최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CW_{z,t}$ = t 시점의 차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구성종목 선정/교체 기준 세부 내용

√대상종목: LME 또는 그 승계기관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Nickel Futures 최근월물

√거래시장: LME 또는 그 승계기관

롤오버 비중	5번째 영업일	6번째 영업일	7번째 영업일	8번째 영업일	9번째 영업일	롤오버 기간 아닐 경우
CW_t (최근월물)	100%	80%	60%	20%	0%	100%
CW_t 차근월물)	0%	20%	40%	80%	100%	0%

롤오버 기간이 아닐 경우 CW_t 의 비중이 100%이므로, 해당 선물 최근월물의 가격변동에 의해 기초지수 값이 결정됩니다. 해당 선물의 롤오버 방법의 경우 하단의 '롤오버 방법'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P_{y,t} = t$ 시점의 최근월물 선물 정산 가격.

$FP_{x,t} = t$ 시점의 차근월물 선물 정산 가격.

- 종목 교체(Roll-over) 방법 및 기대효과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5영업일부터 9영업일까지(미국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 2015년 Nickel 선물 롤오버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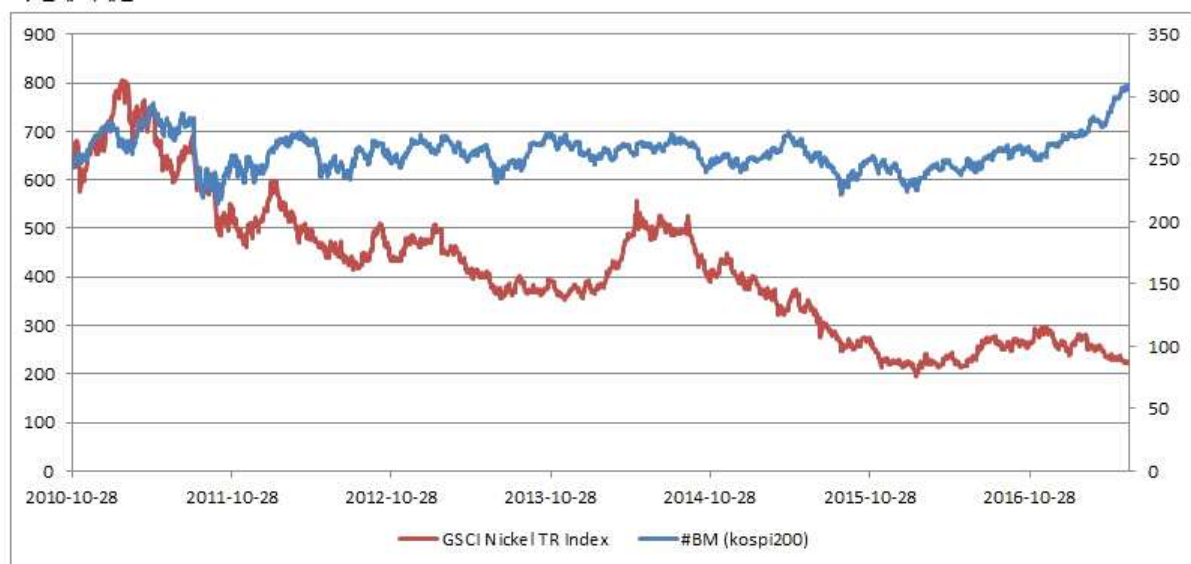
	5영업일 전	4영업일 전	3영업일 전	2영업일 전	1영업일 전
최근월물 비중	80%	60%	40%	20%	100%
차근월물 비중	20%	40%	60%	80%	0%
1월	2015.01.08	2015.01.09	2015.01.12	2015.01.13	2015.01.14
2월	2015.02.06	2015.02.09	2015.02.10	2015.02.11	2015.02.12
3월	2015.03.06	2015.03.09	2015.03.10	2015.03.11	2015.03.12
4월	2015.04.08	2015.04.09	2015.04.10	2015.04.13	2015.04.14
5월	2015.05.07	2015.05.08	2015.05.11	2015.05.12	2015.05.13
6월	2015.06.05	2015.06.08	2015.06.09	2015.06.10	2015.06.11
7월	2015.07.08	2015.07.09	2015.07.10	2015.07.13	2015.07.14
8월	2015.08.07	2015.08.10	2015.08.11	2015.08.12	2015.08.13
9월	2015.09.08	2015.09.09	2015.09.10	2015.09.11	2015.09.14
10월	2015.10.27	2015.10.08	2015.10.09	2015.10.12	2015.10.13
11월	2015.11.06	2015.11.10	2015.11.11	2015.11.12	2015.11.13
12월	2015.12.07	2015.12.08	2015.12.09	2015.12.10	2015.12.11

※ 해당 기초자산의 롤오버 스케줄은 매년 1월 중 당사 ETN(www.daishin.com)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 기초지수 수익률(% , '17.06.13. 기준)

(단위 : %)

기간			기준일 : 2017.06.13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기간	기초지수	-13.91%	-23.47%	-2.68%	-53.62%	-12.92%
		비교지수	11.68%	17.57%	26.04%	18.88%	18.30%
	연평균	기초지수	-55.63%	-46.94%	-2.68%	-17.87%	-2.33%
		비교지수	46.74%	35.13%	26.04%	6.29%	3.29%
변동성	기초지수		19.19%	22.21%	23.87%	24.83%	22.51%
	비교지수		8.81%	7.80%	9.39%	10.01%	8.06%



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Nickel Futures

항목	내용
거래시장	LME 또는 그 승계기관 LME SELECT

거래단위	6MT/ USD
거래통화	USD
거래시간	[한국시간 기준] 월~금 개장 시간: (09:00) 폐장 시간: (04:00)
결제주기	매월 3번째 수요일
최종거래일자	결제월 이전 달의 25일 3영업일 전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 취득 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가. 기초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LME 홈페이지(<http://www.lme.com>)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V.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VI.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7,000,000,000
발행제비용(2)	6,683,300
순수입금[(1)-(2)]	6,993,316,700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35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1항제4호
예탁원수수료	4,000,000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한 ETN수수료 약정서에 의함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6,683,300	-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6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S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3년	건	474	955	1429	24	61	85
	금액	10379	22153	32532	255	867	1122
2014년	건	673	853	1526	63	63	126
	금액	21133	18759	39892	816	385	1201
2015년	건	732	1034	1766	578	759	1337
	금액	27388	20248	47636	20555	13592	34147
2016년	건	656	708	1364	742	849	1591
	금액	7212	9402	16614	18919	14478	33397
합계	건	2535	3550	6085	1407	1732	3139
	금액	66112	70562	136674	40545	29322	69867

구분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3년	건	100	102	202	33	15	48
	금액	1919	8343	10262	317	3389	3706
2014년	건	93	83	176	12	10	22
	금액	3290	3606	6896	153	1363	1516
2015년	건	104	93	197	76	44	120
	금액	3236	3805	7041	2442	2946	5388
2016년	건	106	39	145	75	63	138
	금액	693	1488	2181	1268	10484	11752
합계	건	403	317	720	196	132	328
	금액	9138	17242	26380	4180	18182	22362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6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B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3년	건	33	23	56	7	10	17

	금액	1771	1531	3302	119	315	434
2014년	건	159	84	243	41	24	65
	금액	5719	7005	12724	1076	913	1989
2015년	건	74	52	126	70	42	112
	금액	2007	3740	5747	1808	1568	3376
2016년	건	32	7	39	61	29	90
	금액	2076	66	2142	2617	808	3425
합계	건	298	166	464	179	105	284
	금액	11573	12342	23915	5620	3604	9224

구분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3년	건	9	21	30	0	5	5
	금액	271	2022	2293	0	58	58
2014년	건	5	62	67	1	23	24
	금액	73	5756	5829	50	2923	2973
2015년	건	23	34	57	21	31	52
	금액	711	7205	7916	672	6907	7579
2016년	건	9	13	22	10	32	42
	금액	2	1758	1760	52	4857	4909
합계	건	46	130	176	32	91	123
	금액	1057	16741	17798	774	14745	15519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6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W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3년	건	1081	42	1123	0	0	0
	금액	13131	49	13180	0	0	0
2014년	건	399	28	427	0	0	0
	금액	4038	26	4064	0	0	0
2015년	건	164	21	185	107	21	128

	금액	1638	10	1648	1084	10	1094
2016년	건	570	40	610	133	40	173
	금액	17913	25	17938	3399	25	3424
합계	건	2214	131	2345	240	61	301
	금액	36720	110	36830	4483	35	4518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16.12.30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계
합계	794,597	61,426	390	15,936	22,460	854,489	1,749,298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현대증권(주) 322,531백만원, 노무라Int.Plc 135,726백만원, NH투자증권(주) 102,862백만원)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 제외)	기타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1) ETN세제 현황

-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 ②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text{Min}(\text{분배시 과표기준가} - \text{매수시 과표기준가} \pm \text{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매매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내 매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 $\text{Min}(\text{매도시 과표기준가} - \text{매수시 과표기준가} \pm \text{과세유보금, 매도가} - \text{매수가} \pm \text{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 산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과세표준 계산 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 외국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Δ 【법인세법 제93조】

* ETF의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자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자(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자(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1%, 해외자산: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1. 참조사항

「I. 회사의 개요」 ~ 「VI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2017년 05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대신증권 제57기 1분기 분기보고서(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3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조회방법

- 사업(분기·반기)보고서의 공시장소

금융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전화번호 : 02-2156-8000)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대신증권 제57기 1분기보고서 참조

한국거래소

(주소 : (본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전화번호 : (본사) 051-662-2000

(서울) 1577-0088, 02-3774-900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